

2026년도「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사업」 투자기업 2차 모집 공고

자동차산업의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「2026년도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6일

(재)자동차융합기술원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 목적

- 상용차 생산량 감소에 따른 도내 부품업체 일감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부품 및 시스템의 국산화 등 사업화가 즉시 가능한 수요기반형(Fast- Track형) 상용차 부품개발 추진
- 도내 완성차 제조사, 특장차 제작사 와 협력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제조사-부품기업 간 상생 협력으로 동반 성장
- 지자체와 투자기업*이 공동으로 개발자금을 조성하고,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부품에 대한 개발비**를 제품개발기업에게*** 지원하는 과제임

* 중소·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전북자치도, 군산시, 김제시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기업(완성차 제조사 및 특장차 제작사 등)

** 목형제작(Mock up), 금형제작, 시험분석, 성능인증 등

*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및 「중견기업법」제2조(정의)에 따른 기업으로 투자기업의 구매확약서를 받고, 투자기업의 수요 요구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

- 제품개발기업은 순수기술개발이 아닌 투자기업의 개발 요청사항 달성을 목표로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받아 단기간에 사업화함

※ 제품개발기업은 김제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

나. 사업규모

- 총 지원금 : 436백만원 이상(지원금 218백만원, 투자기업 218백만원 이상)
 - 개발지원금*은 투자기업의 개발 요청사항에 따른 여러 개의 단위 품목에 대하여 총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원
 - * 개발지원금은 지원금과 투자기업 부담금을 합해 제품개발기업에게 지급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부품의 종류 및 수량의 변동이 될 수 있음

다. 투자기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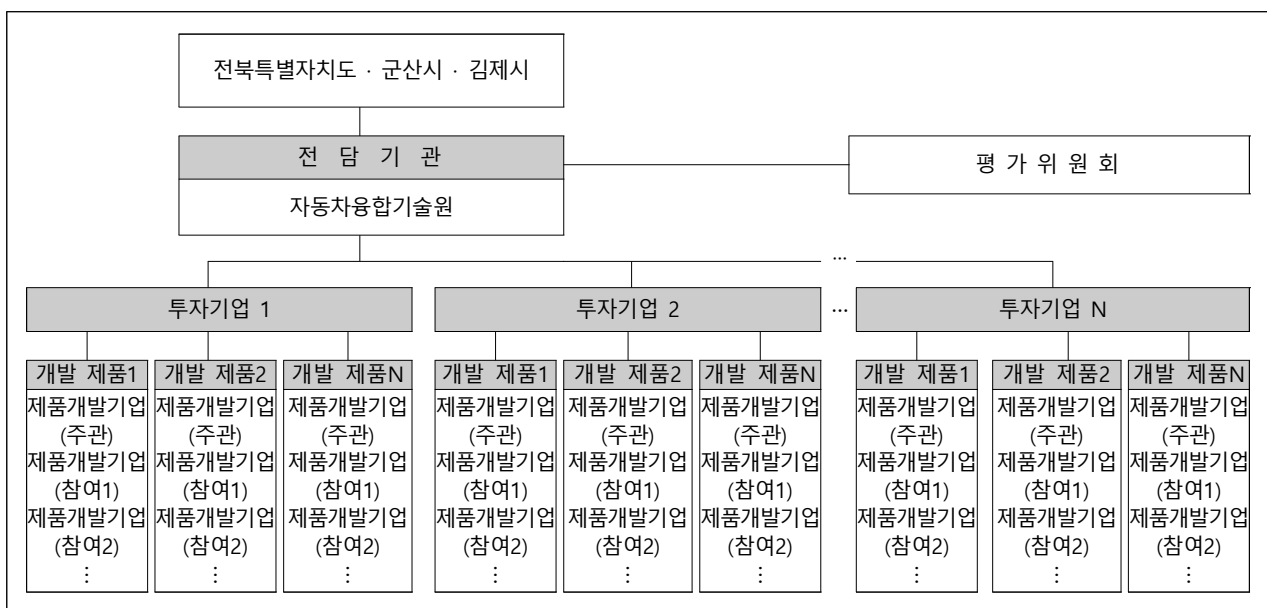
- 투자기업의 정의 및 역할
 - 중소·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전북자치도, 군산, 김제시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기업 또는 영리기관
 -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완성차 제조사 및 특장차 제작사 부품 기술개발 요청사항 제안

라. 투자기업 출연금 비율

- 투자기업 출연금 : 지방비 출연금*에 대응하여 투자
 - * 지방비 출연금 대비 1:1 이상으로 투자하고, 투자금은 전액 현금
- 투자기업 조건 : 기업 또는 영리기관

바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- 추진체계



○ 추진절차

추진내용	추진주체
사업 공고	전북자치도 및 전담기관
↓	
투자 신청서 접수	투자 신청기업 → 전담기관
↓	
접수서류 검토 및 선정 평가위원회	전담기관 / 선정 평가위원회
↓	
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	전담기관 ↔ 투자 신청기업
↓	
투자기업 확정	전담기관
↓	
협약체결 *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투자금 사업비 계좌 이체	전담기관 ↔ 투자기업

2.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
가. 지원 대상

- 주관기관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전북자치도 소재 기업 또는 영리기관, 전북자치도 내 투자 MOU체결기업 (공고일 기준)

나. 신청 자격

-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영리기관(법인 및 개인사업자)으로 ①, ③호 또는 ②, ③호를 충족하는 기업
 - ①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업
 - 도내에 공장등록^{*}을 하였거나 도내 본사(주사무소) 소재 기업
 - *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공장
 - 도내 연구기관 및 연구소 입주기업
 - 도내 창업(기술)보육센터^{*} 입주기업
 - * 중소기업진흥공단, 대학, 국공립.정부출연 연구기관, 전북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.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

- ② 전북자치도 또는 기초 지자체와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한 기업
 - 부품기업의 육성 및 지역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한 기업

-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

*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,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,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

- 단, 기업 단독 추진방식은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 제외)를 보유한 기업만 가능

○ 공통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*는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* 투자기업, 제품개발기업(주관, 참여), 대표자, 과제책임자)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- 이미 개발된 R&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 사업 계획서의 제목, 개발 목표 등 관련 내용 공시

다. 기술료 징수 : 별도 없음

- 본 사업은 자동차산업 침체로 인해 매출.생산 감소에 직면한 도내 중소.중견 부품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,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

3. 평가 방법 및 기준

가. 평가방법

- 접수과제의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대면(발표)평가 실시
- 대면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, 평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
나. 평가 기준

-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결정
< 선정평가 항목(안) >

항목	지표	평가내용	배점
지원타당성 (30)	부합성	○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	15
	시급성	○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	15
투자기획 (30)	투자목표	○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기획의 구체성과 논리성	10
	투자내용	○ 개발 품목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	10
	사업비편성	○ 개발 품목별 사업비 편성의 구체성 및 적절성	10
결과활용 (25)	시장부합성	○ 개발성공 시 사업화 가능성 (수요가능성 및 시장성)	10
	기대효과	○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	15
투자적극성 (15)	추가투자	○ 지방비 출연금 대비 1:1 투자 외에 추가투자 적극성 - 지방비 대비 5% 증가시마다 1점 부여	15
계			100

* 70점 이상은 「지원가능」, 미만은 「지원제외」 과제로 분류

다.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산.학.연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
- 종합적으로 평가 후, 종합평점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과제 선정

라. 평가절차

추진내용	추진주체	추진일정
사업 공고	전북자치도 및 전담기관	'26. 7. 16.
↓		
투자계획서 접수	신청기업 → 전담기관	'26. 7. 16.~8. 14.
↓		
접수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	전담기관 / 평가위원회	'26. 8. 18.~ 8. 25.
↓		
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* 단독 접수일 경우 이의신청 생략될 수 있음	전담기관 ↔ 신청기업	'26. 8. 25.~ 9. 1.
↓		
투자기업 확정	전담기관	'26. 9. 2.
↓		
협약체결 *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투자기업 투자금 사업비 계좌로 이체	전담기관 ↔ 투자기업	~'26. 9. 30.

* 온라인 접수기간 : '26. 7. 16. (금) ~ 8. 14.(금)까지 / 선정평가 '26. 8. 25.(화) 예정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4. 신청방법

가. 신청요령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
 -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(pms.jiat.re.kr) > 온라인사업관리 > 온라인사업신청
- 신청기간 : '26. 7. 16. (목) ~ 8. 14.(금) 까지
 - *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 (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마감 시까지 수정이 가능함)
 - *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통합관리시스템 (pms.jiat.re.kr) 참조
 - *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할 것
 - * 필요시 추가서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식 교부: 통합관리시스템(pms.jiat.re.kr) > 알림마당 >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
- (투자기업) 제출 서류

NO	제출서류	필수여부	비고
1	투자기업 참여 신청서 (완성차 수요확정형 기업지원-제1-1호)	필수	1부씩 제출
2	투자계획서 (완성차 수요확정형 기업지원-제1-2호)		
3	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(완성차 수요확정형 기업지원-제1-3호)		
4	투자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(완성차 수요확정형 기업지원-제1-4호)		
5	재무·신용정보 조회 동의서(완성차 수요확정형 기업지원-제1-5호)		
6	투자기관의 출연금(현금) 납입 약약서(완성차 수요확정형 기업지원-제1-6호)		
7	투자기업의 지원 우선순위표(완성차 수요확정형 기업지원-제1-7호)		
8	기업 또는 영리기관 확인서(별도 서식 없음)		
9	법인등기부 등본, 법인인감증명, 사업자등록증(사본)		
10	표준재무제표(최근 2개년)		
11	사용인감계 (완성차 수요확정형 기업지원-제1-8호)	해당시	

□ 문의처

- 사업관련 및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
 -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성장지원팀 사업 담당자 (063-730-7033)

5. 유의사항

가. 지원제외 처리기준

☐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- 투자기업, 투자기업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비적용)
 - 기업의 부도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☐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-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☐물품의 귀속

- 본 사업의 개발결과물(금형 등)의 소유권은 제품개발기업과 투자기업이 협의하여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음

6. 관련법령 및 규정

-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
-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·관리 규정
-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름